

(사업방법서 별지)

1.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

2.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남 자	여 자
종신	일시납	만 15세 ~ 70세	만 15세 ~ 70세
	10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15년납	만 15세 ~ 59세	만 15세 ~ 60세
	2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50세납	만 15세 ~ 36세	만 15세 ~ 37세
	55세납	만 15세 ~ 41세	만 15세 ~ 41세
	60세납	만 15세 ~ 46세	만 15세 ~ 46세
	65세납	만 15세 ~ 51세	만 15세 ~ 51세
	70세납	만 15세 ~ 56세	만 15세 ~ 56세
	80세납	만 15세 ~ 49세	만 15세 ~ 60세

3.

월납

4.

배당금이 없음

5.

가. 기본보험금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의 보험금액으로 보험료 및 예정책임준비금 계산 등의 기초가 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의해 기본보험금액은 증액 및 감액될 수 있으며,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보험금액을 기본보험금액으로 한다.

나. 변동보험금액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적립금 포함)과 기본보험계약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이에 의해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재산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6.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3)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 ①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위험보험료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②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으로 처리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① 채권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 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② 혼합1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 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

(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③ 혼합간접형(Fund of funds)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 등을 포함한 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간접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영하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2)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가입금액 기준 영업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중 1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 기준 영업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계약자는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 펀드 각각에 대하여 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펀드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이전시 펀드적립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한다.
- ③ 회사는 '①'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적립금의 0.1% 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와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바.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한 경우
-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7.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특별계정 투입순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라 한다)를 ‘12.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4)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단,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9. ()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부활(효력회복)시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기본보험금 및 변동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이후 변동보험금액은 부활(효력회복)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한다.
-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중 특별계정 적립보험료 해당액[자연식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로 한다.

10.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계약자 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라. 회사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납입연체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대출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11.

기본보험금액 5,000만원 이상의 월납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할인을 한다.

기본보험금액	할인율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
2억원 이상	4%

12.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제1회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기본보험계약의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계속보험료

납입응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응당일, 납입응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하며, 납입응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부터 납입응당일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한다.

나. 변동보험금에 관한 사항

- (1) 변동보험금은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일시납 예정책임준비금으로 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어 매월 변동되며 부치일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2) 회사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1)'에서 계산한 변동보험금에 해당하는 월공제액을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일반보험으로 전환

계약자가 변액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한다.

마. 보험금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바.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수수료
-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